

#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

##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25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7. 14.

발의자 : 이만희 · 이명수 · 권성동

백종현 · 구자근 · 이인선

허은아 · 이태규 · 조은희

김미애 · 박성민 · 배준영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

경찰청은 2016년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에 신설하여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. 또한 2018년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 개정을 통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, 보상금 지급 후 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음.

한편 해양경찰청 역시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나,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, 손실보상금 지급 시 보고, 부정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환수 규정에 해양경찰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, 손실보상금 지급 시 위원회

보고, 부정지급 손실보상금 환수 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현행  
제도의 입법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환  
수기관에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추가(안 제11조의2제  
4항, 안 제11조의2제6항)
- 나. 손실보상금 지급 심사자료·결과 보고 대상에 해양경찰위원회를  
추가(안 제11조의2제5항)
- 다.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기관에 해양경찰청장, 지방해양  
경찰청장, 해양경찰서장을 추가(안 제11조의3)

##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4항 중 “경찰청장 또는 시·도경찰청장”을 “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국가경찰위원회”를 각각 “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경찰청장 또는 시·도경찰청장”을 “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”을 “해양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,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(이하 이 조에서 “경찰청장등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”을 “경찰청장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“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”을 각각 “경찰청장등”으로 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의2(손실보상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<u>경찰청장 또는 시·도경찰</u> <u>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</u> <u>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라</u> 보상금을 지급하고,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⑤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국가경찰</u> <u>위원회에</u>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<u>국가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</u> 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⑥ <u>경찰청장 또는 시·도경찰</u> <u>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</u>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</p>	<p>제11조의2(손실보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</u> 장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⑤----- ----- -----<u>국가경찰</u> <u>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</u>-- -----<u>국가경</u> <u>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⑥ <u>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</u> 장----- -----</p>

<p>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⑦ (생 략)</p> <p>제11조의3(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) ① 경찰청장, <u>시·도경찰청장</u> 또는 <u>경찰서장</u>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의3(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) ① -----해양경찰청장, <u>시·도경찰청장</u>, <u>지방해양경찰청장</u>, <u>경찰서장</u> 또는 <u>해양경찰서장</u>(이하 이 조에서 “경찰청장등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.</p>
<p>1. ~ 4. (생 략)</p> <p>② <u>경찰청장</u>, <u>시·도경찰청장</u> 및 <u>경찰서장</u>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p>	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경찰청장등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③ (생 략)</p> <p>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<u>경찰청장</u>, <u>시·도경찰청장</u> 또는 <u>경찰서장</u>이 임명한다.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경찰청장등----- -----.</p>

<p>⑤ <u>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</u>  <u>또는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</u>  <u>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·의</u>  <u>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,</u>  <u>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</u>  <u>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</u>  <u>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.</u></p> <p>⑥ <u>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</u>  <u>또는 경찰서장은 제5항에 따라</u>  <u>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</u>  <u>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</u>  <u>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</u>  <u>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</u>  <u>따라 징수할 수 있다.</u></p> <p>⑦ (생략)</p>	<p>⑤ <u>경찰청장등-----</u>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.</p> <p>⑥ <u>경찰청장등-----</u>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.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
--	--